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
----------	-----

제출년월일 : 2016. 7.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되어 「평창군 여성발전조례」를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을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에서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 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과, 군과 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공직 및 근로자의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
- 마. 일·가정 양립 지원,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및 결산, 성인지 교육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사.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며, 양성평등한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안 제21조)
- 아. 양성평등 추진 및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6. 4. 12. ~ 5. 02.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비규제(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법제심사 : 일부분구 수정 반영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창군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적 지휘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관계자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한 경우
3. 위원의 품의를 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양성평등정책

제13조(양성평등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공직에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
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6.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의 보장 및 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
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성차별 금지)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정책 촉진 및 문화확산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회복지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단체 및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전부개정 전의 「평창군 여성발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5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 군수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여성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예산 또는 사회복지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연락처	(033) 330 - 2150